

제255회 제1차 정례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2. 10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46 |
|----------|------|

2022. 10. 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9. 7.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2. 10. 7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안찬율 기획경제국장

나. 제출사유

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(안 제3조)

-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물가모니터 요원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, 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2. 8. 10. ~ 8. 30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1946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2022년 9월 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~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, 이용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표지판 제작·교부,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,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·방역 및 소모품 지원,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,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~제7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,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도록 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하고, 아울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